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. 2. 13 선고 2018가단511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1. 23.

판결 선고 2019. 2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97. 4. 4. 접수 제80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설승원

별지